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2
----------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2002년도부터 중학교(신입생)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고, 신도시 지역의 입주에 따른 신설통이 증가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통장자녀 장학금 운영과 관련 현실과 불부합하는 사항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동 조례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목적 규정중 비현실적인 내용을 정비함 (안 제1조).
- 나. 장학생의 자격(성적)을 완화하고, 기·예·체능 관련 장학생의 요건을 시 단위이상 대회의 입상자로 객관화함 (안 제2조).
- 다. 장학금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7조제1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3. 23 ~ 4. 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생활에 모범인 자”로 한다.

제2조의 본문중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를 “당해 연도 2월말 현재 2년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속한 자”로 하고, 동조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 및 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제1호중 “100분의 50이내”를 “100분의 70이내”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당해 연도 2월말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 시 단위이상의 해당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매학년초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선발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장학금 수혜횟수, 통장 근속년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미수혜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중 “공납금 정액”을 “당해 학년도의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금의 지급은 공납금 납입기간 경과후 1개월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통장)에게 계좌 입금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주민자치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민자치과장 강 대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민자치담당 이 규 환
	담당자 성명·전화	장 회 정 (행정 344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제1조(목적)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생활에 모범인 자-----</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신설></p> <p>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p> <p>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당해 연도 2월말 현재 2년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속한 자-----다만, 의무교육 대상자 및 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p> <p>1. -----100분의 70이내-----</p> <p>2. -----재능이 뛰어난 자로 당해 연도 2월말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 시 단위 이상의 해당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p>
<p>제4조(선발) ①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4조(선발)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매학년초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선발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장학금 수혜횟수, 통장 근속년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미수혜자를 우선으로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정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p>	<p>제6조(장학금액)----- -----당해 학년도의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의 지급은 공납금 납입기간 경과후 1개월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통장)에게 계좌 입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p> <p>3. ~ 5. (생략)</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게 된 때</p> <p>3. ~ 5. (현행과 같음)</p>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042
----------	------

제안년월일 : 2002. 4. 22.

제안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2조 제2호의 “2월말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를 “2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이내에”로 수정함.(안 제2조)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2월말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를 “2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이내에”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장학생의 자격)장학생은 당해연도 2월말 현재 2년 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체)등으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기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p> <p>1. (생략)</p> <p>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당해연도 2월말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 시 단위 이상의 해당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p>	<p>제2조(장학생의 자격).....</p> <p>.....</p> <p>.....</p> <p>.....</p> <p>.....</p> <p>.....</p> <p>.....</p> <p>1. (원안과 같음)</p> <p>2.</p> <p>.....</p> <p><u>2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이내에</u>.....</p> <p>.....</p>